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059호 2014.12. 1.(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7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31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173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1. 28.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청라커널로 229-6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1. 2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11-2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경서동 962-9	청라커널로 229-6	2011-06-29	청라경관구조 계획에 의거 청라중심에 canal이 있음을 부각	
2	인천 서구 검암동 672-7	승학로382번길 11	2009-08-28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 서구 경서동 733-9	경서로56번길 3-11	2009-08-28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 서구 공촌동 10-2	서곶로450번길 77-45	2008-11-21	서곶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 서구 연희동 52-1	경명대로 622	2009-06-30	계양산과 천마산사이 징행이고개를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징행이고개의 한자표기말인 <경명>명칭에서 부여	
6	인천 서구 경서동 1000-10	이화로 27	2012-10-19	경서동이 배밭이 발달한 지역적 특성 반영	
7	인천 서구 검암동 666-3	승학로372번길 39	2009-08-28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 서구 경서동 363-326	원전로59번길 34	2009-08-28	원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 서구 경서동 964-2	청라커널로223번길 17	2011-06-29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 서구 연희동 689	연희로 19	2010-11-05	행정구역인 연희동의 동명을 따 명명	
11	인천 서구 오류동 1653-3, 1653-4	검단로102번길 13	2012-10-25	검단로 시작지점부터 1,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 서구 왕길동 203-1	원당대로507번길 6-10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 서구 원당동 840-11	고산후로 148	2008-12-31	고산후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	
14	인천 서구 왕길동 172-6	봉수대로1394번길 41-4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 서구 오류동 1626-10	보듬5로 12	2012-10-25	보듬로에서 다섯번째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 서구 오류동 1623-5	마중로 117	2012-10-25	"나가서 맞이한다"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17	인천 서구 오류동 1645-17, 1645-19, 1645-18	검단로54번길 22	2012-10-25	검단로 시작지점부터 5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17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4. 11. 28.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완정로65번안길 76-2외 3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4-11-2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왕길동 203-1	완정로65번안길 76-2	2014-11-18	건물말소	
2	인천 서구 원창동 21	봉수대로501번길 46	2014-11-19	건물말소	
3	인천 서구 오류동 1645-17	검단로54번길 18	2014-11-28	건물말소	
4	인천 서구 왕길동 213-2	완정로65번안길 42-5	2014-11-10	건물말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31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5호) 제9조 규정이 지난 2014. 6. 30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내용의 일부개정코자 함.

#### 2. 주요 개정내용

- 제5조의5내지7 신설(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574) 또는 Fax(560-270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제1항제6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 략)</p> <p>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u>그밖에</u>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p> <p>4.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 ----- <u>그 밖에</u> ----- -----.</p> <p>4.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서구</u> 본청·구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p>	<p>제3조(적용범위) ----- <u>인천광역시 서구</u> ----- ----- ----- -----.</p>
<p>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급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p>	<p>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 ----- ----- ----- -----</p>

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③ (생략)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  
-----  
-----

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 5. (생략)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  
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 ④ (생략)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③ (생략)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  
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유  
지·관리하여야 한다.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따라 -----  
-----.

## 관계법령 발췌

### □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4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해당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3.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4.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5.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